

# 안산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1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14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안산시 출자·출연기관의 채용절차를 통합·일원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 시험 등 적절한 절차 이행(안 제3조)
  - 채용절차를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
- 시장은 채용시험을 위탁받은 경우 통합하여 채용 실시(안 제3조의3)
  - 통합채용이 곤란한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자체 채용절차 실시

## 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##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6. 27. ~ 2023. 7. 18. (21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**[붙임 1]**

**안산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안산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통합채용 실시)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위탁받은 경우, 출자·출연 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,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이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이 선 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재정심사팀장 신 문 호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조 병 구 (행정 3029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b>제3조(조직·인력의 운용) (생   략)</b></p> <p>  &lt; 신   설 &gt;</p> <p>  &lt; 신   설 &gt;</p> <p>  &lt; 신   설 &gt;</p>	<p><b>제3조(조직·인력의 운용) ①</b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  ② <u>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12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  ③ <u>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제3조의3(통합채용 실시)</b> <u>시장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위탁받은 경우, 출자·출연 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, 직무 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이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